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(김경이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(김경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2월 28일

발의자 : 고영옥, 김경이, 김육영, 소형준,
오중균, 이관우, 이용진, 이인순,
임태근, 임현주

1. 제안이유

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, 약사의 복
약지도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의 운
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과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4조
및 제5조)

라.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와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
및 제7조)

마.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와 홍보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약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부서협의 : 의약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3. 6. ~ 2025. 3. 1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,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통한 의약품 오·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심야약국”이란 「약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
2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,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)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제6조(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)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
제7조(지원금의 환수)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8조(공공심야약국의 관리)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제9조(홍보)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